#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3250 발의연월일: 2024. 8. 27.

발 의 자:김예지・임종득・백종헌

김선교 · 김미애 · 박덕흠

엄태영 · 김소희 · 송석준

박주민 · 김도읍 · 서미화

최수진 · 강대식 · 주호영

의원(15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정책의 결정과 그 실시에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, 배우자,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, 현행법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장애인과 그 가족 등이 장애인 관련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는

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, 배우자,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정책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의 부모, 배우자,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	제6조(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
계획의 수립) ① ~ ③ (생	계획의 수립) ① ~ ③ (현행과
략)	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
	을 수립하는 경우 장애인 및
	장애인의 부모, 배우자, 그 밖
	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자의 의
	<u>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⑤ 제4항에 따른 의견 수렴의
	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
	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
	<u> 정한다.</u>